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1064호 2014.12.29.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8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 3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454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364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----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4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 공고 ----- 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46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(안)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----- 10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4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14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468호 등록 및 폐기공인 공고 ----- 2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469호 공시송달 공고 ----- 30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84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2. 26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11의 10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12. 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4-12-26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경서동 966-10	청라루비로42번길 11	2011-02-14	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경서동 976-57	푸른로7번길 9	2013-07-30	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 서구 석남동 223-359	봉수대로300번길 3	2009-07-01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 서구 가좌동 570-30	장고개로126번길 3-1	2009-06-30	장고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 서구 원창동 21-16	봉수대로501번길 58-16	2009-07-01	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 서구 오류동 1628-2	검단천로 346	2009-09-22	김포시계 검단천에서 시작되어 검단천로로 명명	
7	인천 서구 금곡동 592-3, 593-1	신동길 81	2009-09-22	신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	
8	인천 서구 불로동 777-4	검단로777번길 4-17	2008-12-31	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,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 서구 마전동 631	완정로65번안길 38	2008-12-31	완정로65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 있는 도로	
10	인천 서구 금곡동 723-21	완정로228번안길 3	2008-12-31	완정로22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 있는 도로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85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4. 12. 26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건지로218번길 11외 1건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	별 도	열 략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

고시일 : 2014-12-26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석남동 223-177	건지로218번길 11	2014-12-17	건물 멸실	
2	인천 서구 마전동 631번지	완정로65번안길 38	2014-12-22	건물 멸실	

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454호

##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중3-364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계획시설 【도로명 : 중로3류364호선, 사업명 : 불로동 중3-364호선 도로개설공사】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위하여 열람·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12. 23.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변경사유 : 지적분할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및 지장물 조서 변경
2. 사업시행지(변경없음) :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41번지 일원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 - 종류 : 도시계획도로(중로3류364호선)
  - 명칭 : 불로동 중3-364호선 도로개설공사
4. 사업의 규모 (변경)
  - 【당초】 L=400m, B=12m, A=5,103㎡
  - 【변경】 L=400m, B=12m, A=5,047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 - 성명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 -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(변경없음) : 2014. 11. 10. ~ 2015. 12. 31.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변경) : 불임과 같음
8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## ■ 용 지 조 서 ( 변경 )

불로동 중3-364호선 도로개설공사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당초	변경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관계	
1	불로동	141	구	1,690	293	290	국	농림축산식품부				
2		135-3	과	2,998	44	44	박경수	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1-7 신라아파트 101-703				
3		135-4	전	3,156	258	260	강혁희 외 1인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-44 송도해모로아파트 115-1302				
4		150-2	구	145	107	101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5		135-5	답	2,692	173	172	김경일	김포시 사우동 1263	김포농업협동조합	김포시 국변동 301-2(풍무동지점)	근저당	
6		151-3	구	238	238	238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7		129	도	2,455	1,031	962	국	농림축산식품부				
8		135-7	답	1,588	158	158	김영원 외 3인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-6	검단단위농업협동조합	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97-1	근저당	
9		152-2	구	231	231	231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10		156-1	구	2	2	2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11		135-6	대	660	183	179	김영원 외 3인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-6	검단단위농업협동조합	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97-1	근저당	
12		153-2	구	291	291	291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13		132	구	1,041	14	16	국	농림축산식품부				
14		154-2	구	17	17	17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15		156-2	구	7	7	7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16		128-3	전	5,341	138	137	맹은숙	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4 건영아파트 104동 1605호				
17		155-2	구	251	251	251	삼선태순	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71				
18		156-3	구	10	10	10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19		175-1	구	387	387	387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20		128-4	답	3,536	300	308	이한택	김포면 감정리 496	김포농업협동조합	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289-2	근저당	
21		128-5	답	748	148	152	이한택	김포면 감정리 496				
22		175-3	답	440	440	440	한국농어촌공사	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				
23		120	구	7,011	128	139	국	농림축산식품부				
24		173-6	전	1,560	11	10	김형주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-2 신명아파트 104동 302호				
25		185-34	도	1,624	57	56	국	건설교통부				
26		96	구	9,971	118	121	국	농림축산식품부				
27		313-6	도	119	19	19	홍기영	충남 천안시 쌍용동 산44-1				
28		174	도	987	49	49	국	농림축산식품부				
계				49,196	5,103	5,047	(감56)					

## ■ 지 장 물 조 서

【당초】

번호	소 재 지	규 격	수량	소 유 자	비 고
1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1-1	L=14.7~19.3m, B=8.3m 조립식건물	1동	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48, 113동 1503호(고척동, 고척대우아파트)	정현모
2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-7	L=10.0m, B=4.6m 비닐하우스	1동	인천 서구 불노동 135-6	김영원 외 3인
3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2-3	L=12.3m, B=4.9m 컨테이너	1동	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48, 113동 1503호(고척동, 고척대우아파트)	정현모
4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3-1	L=13.8m, B=4.4~5.2m 조립식건물	1동	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, 101동 706호(연산동, 연산동에스케이뷰)	남용우
5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5-2	L=12.0m, B=3.1m 비닐하우스	1동	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71	삼선태순
6	한전주		주	11	
7	전력맨홀		개소	2	
8	고압전선관로		M	470	
9	CCTV		개소	1	
10	체신주		개소	5	

【변경】

번호	소재지	규격	수량	토지 소유자	지장물 소유자		
1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1-1	L=14.7~19.3m, B=8.3m 조립식건물	1동	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48, 113동 1503호(고척동, 고척대우아파트) 정현모	이종미		
2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-7	L=10.0m, B=4.6m 비닐하우스	1동	인천 서구 불노동 135-6 김영원 외3인	이정희		
		감나무(H=3m, D=3cm)	1그루				
3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-6	회양목(H=1.7m, D=2cm)	58그루				
		탱자나무(H=1.8m, D=2cm)	50그루				
		감나무(H=3m, D=3cm)	1그루				
		목련(H=4.5m, D=15cm)	1그루				
		철재간판(H=7m, B=1m)	1개소				
		우물(1.2m×1.2m)	1개소				
		울타리(H=1.5m, L=4m)	1식				
4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2-3	L=12.3m, B=4.9m 컨테이너	1동			서울 구로구 고척로52길 48, 113동 1503호(고척동, 고척대우아파트) 정현모	이종미
		철재대문 (H=1.9m, L=8.5m)	1식				
5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3-1	L=13.8m, B=4.4~5.2m 조립식건물	1동	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, 101동 706호(연산동, 연산동에스케이뷰) 남용우	남용우		
6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5-2	L=12.0m, B=3.1m 비닐하우스	1동	김포군 감단면 불노리 71 삼선태순	김종학		
7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2	강봉간판(H=1.5m)	1개소	국(농림축산식품부)	별빛교회		
		강봉간판(H=1.5m)	1개소		신일금속		
8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3-2	강봉간판(H=1.4m)	1개소	한국농어촌공사	국제냉동기		
		목재간판(H=1.5m)	1개소		다사랑유치원		
9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55-12	철재간판(H=7m, B=1.1m)	1개소	인천광역시 서구	다사랑유치원		
10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28-3	강봉울타리(H=1m, L=45m)	1식	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24 건영아파트 104동 1605호 맹은숙	김종학		
11	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29	강봉간판(H=1.7m)	1개소	국(농림축산식품부)	별빛교회		
		강봉간판(H=4.5m)	1개소	국(농림축산식품부)	진산각		
		강봉간판(H=1.7m)	1개소	국(농림축산식품부)	우리집식당		
12	한전주		주	11			
13	전력맨홀		개소	2			
14	고압전선관로		M	470			
15	CCTV		개소	1			
16	체신주		개소	5			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462호

##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열람·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2. 29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 - 도로 결정(변경)

구 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결정일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기 정	소로	1	4	10	특수 도로	22.25	대1-19	소2-44	보행자 도로	인고93-130 (93.09.28)
변 경	소로	1	4	10	국지 도로	18.75	대1-19	소2-44	일반 도로	"

- 공공공지 결정(변경)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 경	5	공공공지	검암동 625-9번지 일원	365.3	감)128.3	237	인고2011-188호 (2011.08.01)	
폐 지	6	공공공지	검암동 665-1번지 일원	204.3	감)204.3	-	인고2011-188호 (2011.08.01)	
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 없음)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조서(변경 없음)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 없음)
6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  -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  -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: 열람 장소에 비치
7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(☎560-4762)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463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(안)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

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,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(일부)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(안)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12. 29.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: 2014. 12. 29. ~ 2015. 01. 13.(15일간)
2. 공고내용 : 별첨 조서 참조

구 분	계	로	길	비고
가정지구	2	0	2	

3.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
  - 관계서류 : 도로구간 설정/ 도로명 부여 도면
  - 열람방법 : 서구청 토지정보과,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 
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열람(<http://www.seo.incheon.kr/>)
4. 의견 제출방법
 

**【별첨】** 조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**【붙임】**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·팩스·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- 제출하는 곳 :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
    - 방문 : 서구청 토지정보과, 동 주민센터
    - 전화 : 서구청 토지정보과 (☎560-4832)
    - 팩스 : 서구청 토지정보과 (☎560-2786)
    - 우편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, 서구청 토지정보과 (404-701)
5. 도로명 확정 : 의견수렴 후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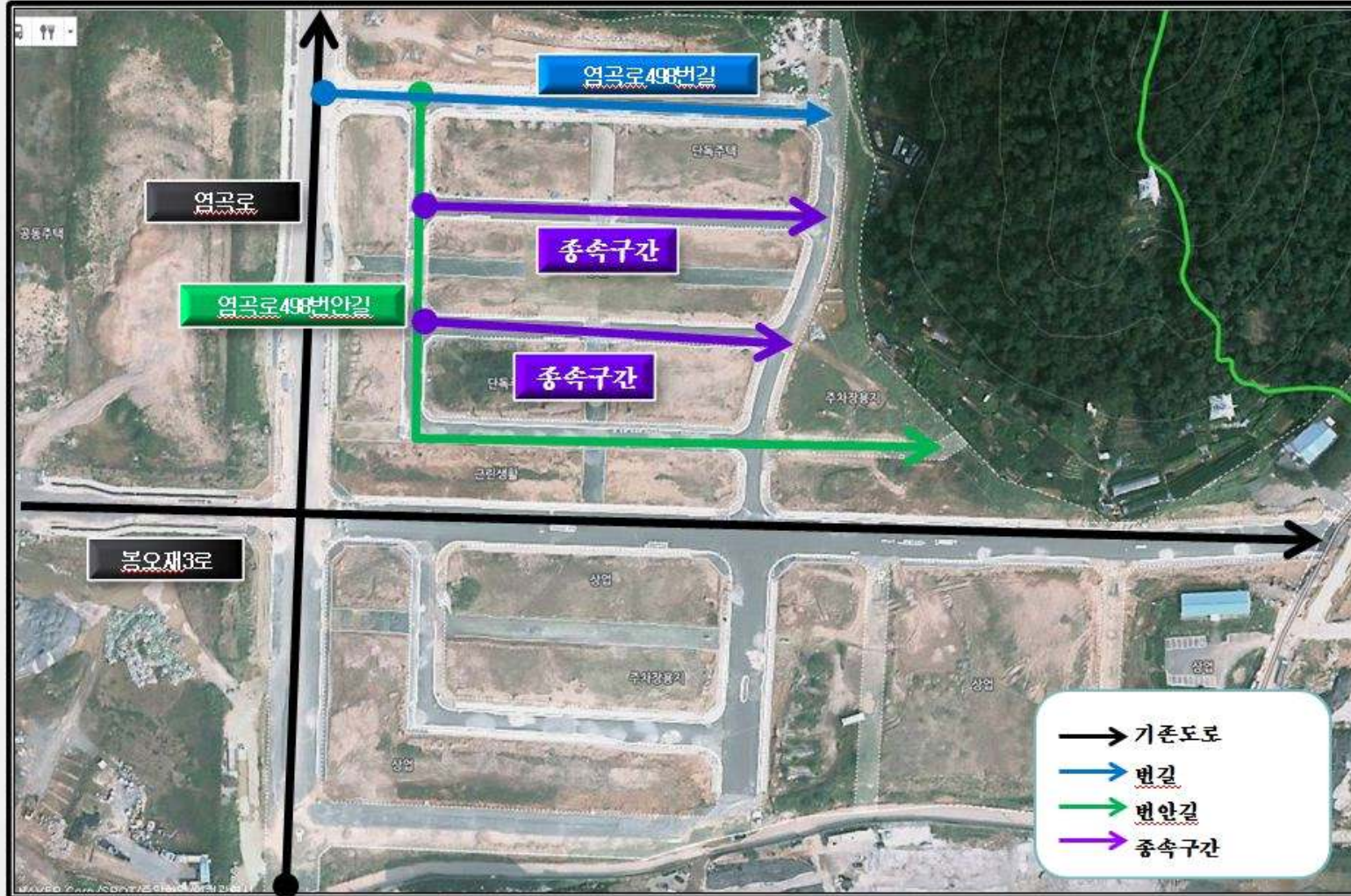
#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(안) 조서

연번	도로 구분	예비도로명	기 점		종 점		제 원		기초간격 (m)	관할 행정구역	도로명 부여사유
			읍면동	지번	읍면동	지번	길이(km)	폭(m)			
1	길	염곡로498번길	가정동	120-81	가정동	산30-1	0.236	14.988	20	가정1동	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,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도로
2	길	염곡로498번안길	가정동	143-1	가정동	149-4	0.394	12.44	20	가정1동	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# 가정지구 일부 도로명 부여(안)



# 가정지구 일부 도로명 부여(안)



##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464호

『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년 12월 26일

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이 일부 개정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관련 조항 정비 및 서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추가
 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
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
  -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
 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3년에서 재위탁 근거 마련
  -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신설
- 서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의 보조 근거 마련
- 보조금의 반환명령 신설

### 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여성보육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5721) 또는 Fax(560-2744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

제9조제4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에는(단, 2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구립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각각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”를 “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보육정보센터 구성)”을 “(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보육정보센터 기능)”을 “(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육아지원”을 “부모교육 운영 및 육아지원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

8.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
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의 제목 “(보육정보센터 지도·감독)”을 “(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23조를 제25조로 하고,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비용의 보조)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.

1.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

2.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사업

3.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

4. 그 밖의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.

제24조(보조금의 반환 명령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

다.

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2. 사업 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9조(위탁계약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지정한다.</p>	<p>제9조(위탁계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경우에는 <u>(단, 2회에 한하여 재공고를 실시한다)</u> -----.</p>
<p>제15조(지원 및 비용부담) ①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<u>어린이집</u>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탁자는 <u>어린이집</u>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지원 및 비용부담) ① ----- <u>구립어린이집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구립어린이집</u>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<u>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</u>)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</p>	<p>제18조(<u>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</u>) ① -----</p>

동의 보육에 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19조(보육정보센터 구성)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과 보육전문교원 외에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.

② 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와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18조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탁·운영할 경우에

-----  
--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.

② -----  
-----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.

-----하되,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)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  
-----.

②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  
-----.

는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, 보육전문요원 등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(보육정보센터 기능) 보육정보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
- 7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신설>

<신설>

제21조(보육정보센터 지도·감독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·검사 하게 할 수 있다.

제22조(비용) 보육정보센터의 설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0조(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)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부모교육 운영 및 육아지원-----
- 7.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
- 8.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대여
- 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1조(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·감독) -----  
육아종합지원센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2조(비용) 육아종합지원센터-----

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및 지방비로 한다.

<신 설>

제23조 (생략)

<신 설>

-----  
-----.

제23조(비용의 보조)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1.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
2. 어린이집 운동회 지원 사업
3.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 교육 훈련 비용
4. 그 밖의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.

제25조 (현행 제23조와 같음)

제24조(보조금의 반환 명령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

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쇄  
또는 취소된 경우

2. 사업 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  
금을 사용한 경우
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
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  
우

## 관련 법령 자료

## □ 영유아보육법

**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**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0.1.18., 2013.6.4.>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. <개정 2013.6.4.>

③ 삭제 <2011.8.4.>

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기능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8.4., 2013.6.4.>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[제목개정 2013.6.4.]

**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11.6.7., 2011.8.4., 2013.6.4.>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**제40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7., 2011.8.4., 2011.12.31., 2013.6.4.>

## □ 영유아보육법

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삭제 <2011.8.4.>
5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[전문개정 2007.10.17.]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**제12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)**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에는 자료실,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0.3.15., 2013.12.4., 2014.2.11.>  
[전문개정 2009.6.30.] [제목개정 2013.12.4.]

**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**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각 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12.8., 2013.12.4.>

1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
- 1의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(教具)의 제공 또는 대여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(脆弱保育)에 대한 정보의 제공
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8., 2013.12.4.>

[전문개정 2009.6.30.]

[제목개정 2013.12.4.]

**제14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)**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 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4.>

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3.12.4.>

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(常勤)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4.>

[전문개정 2009.6.30.]

[제목개정 2013.12.4.]

**제24조(비용의 보조)**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10.3.15., 2011.12.8., 2012.2.3., 2013.12.4.>

1. 어린이집의 설치, 증축·개축 및 개수·보수 비용
2. 보육교사 인건비
3. 교재·교구비
4.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비
5.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
6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
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10.3.15.>

## 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**제2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)**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, 영양사, 간호사,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12.8., 2013.12.5.>

[전문개정 2009.7.3.]

[제목개정 2011.12.8., 2013.12.5.]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 - 1468호

##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2. 24.

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### 1. 등록 및 폐기 사유








○ 인증기 신규설치 및 인증기 불용처리

### 2. 공인의 최초 사용일 : 2015년 1월 1일

### 3. 등록 및 폐기공인 내역

“별첨 참조”

○ 등록공인 내역

등록공인명	등록사유	등록일자	인 영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민원봉사과민원전용2	인증기 신규설치	2015년 1월 1일	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민원봉사과민원전용4	인증기 신규설치	2015년 1월 1일	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경제지원과민원전용	인증기 신규설치	2015년 1월 1일	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검암경서동민원전용3	인증기 신규설치	2015년 1월 1일	
검암경서동장인/ 민원전용4	인증기 신규설치	2015년 1월 1일	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연희동민원전용3	인증기 신규설치	2015년 1월 1일	
연희동장인/ 민원전용3	인증기 신규설치	2015년 1월 1일	

## ○ 폐기공인 내역

폐기공인명	폐기사유	폐기일자	인 영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민원봉사과민원전용3	인증기 불용처리	2015년 1월 1일	
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/ 연희동민원용	인증기 불용처리	2015년 1월 1일	
연희동장인/ 민원전용	인증기 불용처리	2015년 1월 1일	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469호

## 공시송달 공고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, 폐문부재·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29일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#### ○ 변경하는 도로명주소

고지대상자	대지위치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
별 도 열 람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○ 공고기간 : 2014. 12. 29. ~ 2015. 01. 13.

#### 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#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문의처 :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(☎ 032-560-4830)

## 공시송달 대상자

연번	고지대상자	대지위치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 시 일	도로명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
1	김**	인천 서구 공촌동	심곡로194번길 ***	2014-11-28	2009-09-22	심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0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